#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성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48 발의연월일: 2021. 3. 17.

발 의 자: 권성동・김선교・김용판

서범수・서병수・윤두현

유주경 • 유창혁 • 유한홍

이 영·한무경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일정한 수역에 어초·해조 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.

그러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, 사업시행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·사용에 대한 협의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소요되어 해조류 등의 생육주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에 대한 적시성을 놓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추가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84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배제 등) ① 다음 각	제3조(적용배제 등) ①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	
용·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	
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6.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41조
	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
	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
	<u>면</u>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